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김미숙 소유물건(2025타경1406)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한동욱

감정평가서번호: K1250808-3003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가교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여용우

(주)가교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지사장 석용범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일억팔천사백만원정 (₩184,000,000.-)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한동욱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인천지방법원 경매13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미숙 (2025타경1406)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제시목록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8.12	2025.08.12	2025.08.12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아파트	1개호	아파트	1개호	-	184,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184,000,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이건치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소재 "임학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 [구분건물(아파트)]내 제4층 제415호로서, 인천지방법원의 임의경매(2025타경1406)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나. 감정평가조건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

3. 기준시점 등

가. 기준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08.12을 기준시점으로 하였음.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물리적 현황 및 시장분석을 위한 실지조사는 2025년 08월 12일에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시 대상물건의 존재 여부, 대상물건의 공부 및 의뢰된 목록과 현황과의 부합 여부, 대상물건의 특성 및 기타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조사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감정평가방법

가. 감정평가 기준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따라 감정평가하였음.

나. 감정평가 평가방법

본건은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과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집합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시산가액을 산정한 후 대상물건의 특성상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사례 등 참고가격자료를 통해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5. 기타 참고 사항

- ① 본건의 소재지, 지번,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거하였음.
- ② 본 평가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인해 부득이하게 내부 확인을 하지 못한 바, 외부관찰 및 탐문조사 등을 참고하였으며 현황과 다소 상이할 수도 있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③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어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대상물건의 개요

1. 대상물건이 속한 전체건물의 개요

[출처 : 집합건축물대장 등]

구분	내 용
명칭	아주아파트
소재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381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927번길 15(병방동)]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4,844m ²
연면적	29,046.66m ²
구조 및 규모	철근콘크리트구조 스투브지붕 지하1층/지상6층
사용승인일자	1989.09.04
주용도	공동주택
기타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비고	-

2. 대상부동산의 현황

기호	층	호	이용상황	전유면적 (m ²)	공용면적 (m ²)	공급면적 (m ²)	대지지분 (m ²)	비고
가	4	415	아파트	48.15	13.1	61.25	31.18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함.

2. 거래사례의 선정

가.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

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 명칭	동/층/호	전유면적 (㎡)	대지권 (㎡)	거래금액 (원)	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비고
								사용승인일	
#1	병방동 38*	*****	3/1/1**	48.15	31.18	170,000,000	3,530,633	2024.06.26	-
								1989.09.04	
#2	병방동 38*	*****	4/1/1**	48.15	31.18	179,000,000	3,717,549	2025.03.08	-
								1989.09.04	

※ 거래단가 = 거래금액 ÷ 전유면적

나. 비교거래사례의 선정

대상물건과 유사한 구분건물 거래사례 중 인근의 거래사례로 대상물건과 위치, 환경, 물적 유사성 등이 있는 **사례 #2**를 비교사례로 선정함.

3. 사정보정

사례#2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시점수정

[출처: KAPA HUB PLUS, 아파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분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2025년	-	100.3	-	-	-	99.9	-	-	-	-	-	-

구분	적용년월	가격지수	비고
기준시점 (2025.08.12)	2025년 06월	99.9	A
사례#2 거래시점 (2025.03.08)	2025년 02월	100.3	B
시점수정치		0.99601	A/B

※ 거래시점 : 2025.03.08인바 2025년 02월 지수를 적용함.

※ 기준시점 : 2025.08.12인바 2025년 06월 지수를 적용함.

5. 지역요인 비교

대상물건과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는 바 지역요인 상호 대등함.(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요인구분	세부항목	일련번호 가 / 사례 #2	
단지의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1.00	대체로 유사함.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단지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1.00	대체로 유사함.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호별요인	층별 효용	1.03	본건은 사례 대비 층별효용 등에서 우세함.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대체로 유사함.
가치형성요인 비교치(누계)		1.03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격 산정

대상물건		거래단가 (원/m ²)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	산정단가 (원/m ²)	산출가액(원)	비준가액(원)
기호	전유면적 (m ²)							
가	48.15	3,717,549	1.000	0.99601	1.03	3,813,797	183,634,326	184,000,000

※ 비준가액은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결정하였음.

IV. 감정평가액 결정 및 의견

1. 참고가격자료

가. 평가전례

[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

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 명칭	동/층/호	전유면적 (m ²)	평가 목적	감정평가액(원)	기준시점	비고
						단가(원/m ²)	사용승인일	
#A	병방동 38*	*****	5/6/6**	54.99	법원 경매	220,000,000	2024.08.28	-
						4,000,727	1989.09.04	
#B	계산동 3*	*****	102/1/1**	54.54	법원 경매	210,000,000	2025.06.24	-
						3,850,385	1990.07.20	
#C	계산동 93*	*****	104/6/6**	65.88	법원 경매	245,000,000	2025.03.07	-
						3,718,883	1989.12.16	

※ 평가단가 = 평가금액 ÷ 전유면적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구분	가 격 수 준
아파트	본건과 유사한 부동산의 가격수준은 층별, 위치별, 실사용면적 등에 따라 전유면적 기준 3,800,000원/m ² 내외 수준으로 탐문조사됨.

2. 감정평가액 결정

구 분	면적(m ²)		비준가격 (원)	감정평가액 (원)	비 고
	공부	사정			
가	48.15	48.15	184,000,000	184,000,000	전유면적 48.15m ² 기준 약 3,821,000원/m ²
합 계				184,000,000	-

3.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평가대상은 아파트로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구분건물로서, 인근 유사 구분건물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가격수준, 부동산시장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기 금액을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 끝 -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27번길 15	381 아주 아파트 제3동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각 1층 ~ 6층	856.80			
				지하	414.54			
				제2종일반주거지역	14,843.4			
	(내) 철근콘크리트조 제4층 제415호			48.15	48.15	184,000,000	현 인천 광역시 계양구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1 소유권대지권	31.18	31.18					
		14,843.4x---						
		14,843.4						
	합 계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110,400,000 73,600,000	₩184,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소재 "임학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단지내 상가, 근린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근린 생활시설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아파트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주도로변에 광역버스, 간선 및 지선버스, 마을순환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편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6층 제3동 제4층 제415호로서,
(사용승인일:1989.09.04)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이기

창호 : 샷시창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상·하수도시설, 급배수시설, 도시가스,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토지는 사다리 형상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북동측, 남동측, 남측으로 각각 소로변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공도와 연결된 단지내 도로를 이용하여 출입이 가능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계양택지(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과 문의)),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애물제한표면구역(수평표면)<공향시설법> , 상대보호구역(2016-06-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중점경관관리구역(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문의032-450-5594)).

(9) 공부와의 차이

귀 제시목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에 1. 인천직할시 북구 병방동 381 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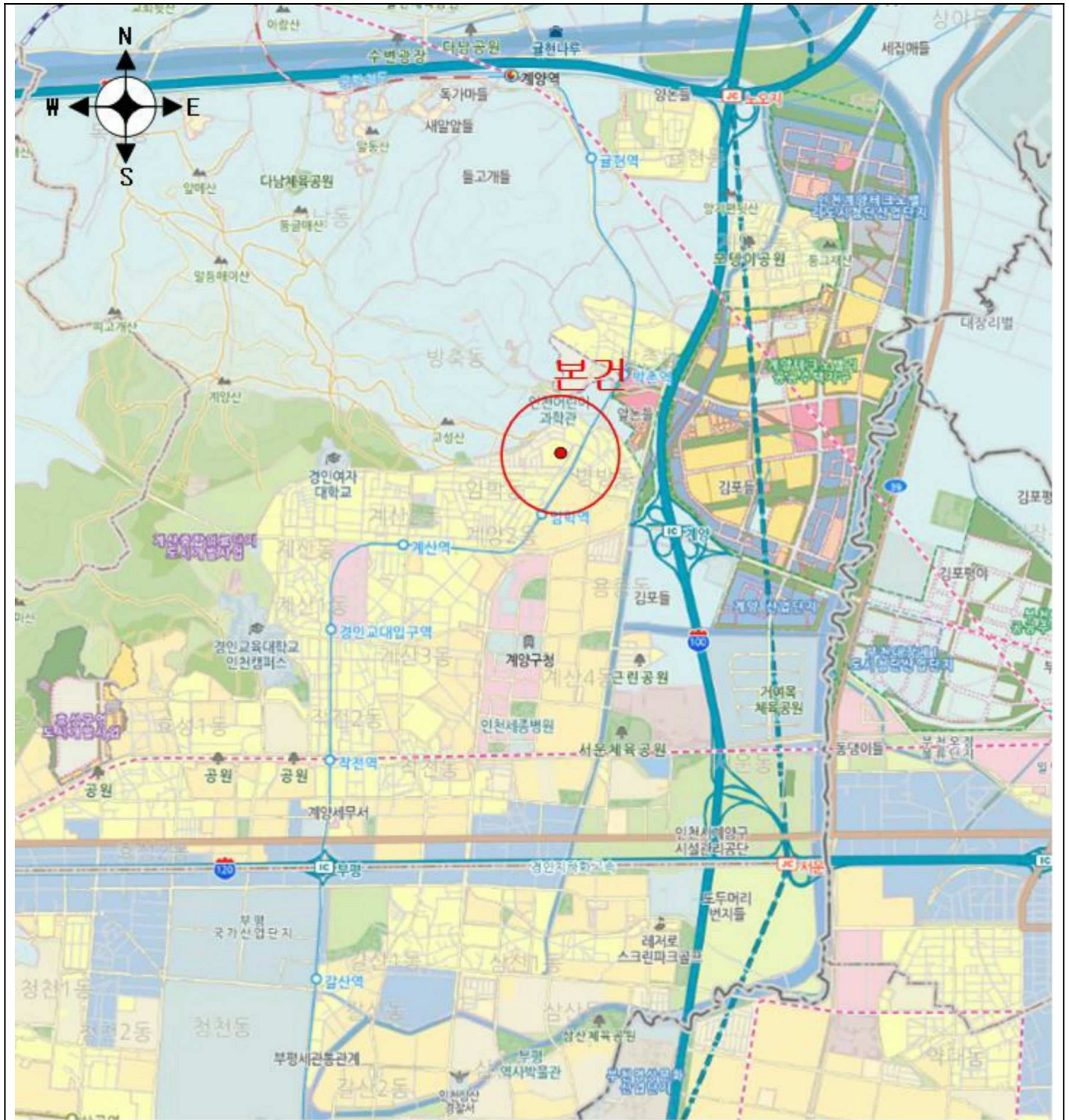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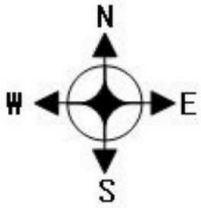
위 치 도



소재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381 아주아파트 제3동 제4층 제415호
-----	---------------------------------------



건물개황도



[건물개황도]

416
415
414
413
412
411
410
409
408
407
406
405
404
403
402
401

본건 :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381
아주아파트 제3동 제4층 제415호



